

대구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모집 공고

대구시설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청년 체험형 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1년 9월 2일

대구시설공단 이사장

1. 채용개요

가. 채용분야 : 청년 체험형 인턴

나. 채용인원 : 12명

다. 근무기간 : 21. 10. 1.(금) ~ 11. 30.(화) (2개월)

라. 근무장소 : 공단 각 사업소 ※ 근무장소는 최종합격 후 배치

마. 주요업무 : 사업소 현안 업무 지원

※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. 응시자격 및 결격사항

가. 응시자격

구 분	응시자격 사항
연 령	○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<u>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</u>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: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 : 2세, 2년 이상 : 3세
주소지	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•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예정자 등록일 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•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(1,095일) 이상인 자
기 타	○ 기타 자격요건 없음

○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, 합격예정자 등록 이후라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고 모집하지 않음.

나. 응시결격사유

-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인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다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하거나 그로 인해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‘취업 가능’ 또는 ‘취업승인’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.
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으로 취업제한을 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공단에서 청년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다.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	5% 또는 10%	증명서에 기재된 가산비율 적용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	3%	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해당자	3%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해당자 및 그 가족	3%	

※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.

※ 직렬별 합격자 중 가점대상자의 합격비율은 30% 이내로 제한합니다.

3. 근로조건 및 보수

구 분	내 용
근무기간	○ 2021.10.1.(금) ~ 11.30.(화) (2개월)
근무시간	○ 주 40시간 전일제(월~금, 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)
근 무 지	○ 공단 각 사업장
보 수	○ 약 192만원/월 (급식비 월 10만원 포함)
기 타	○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○ 1개월 만근 시 월 1회 유급휴가 부여

-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초과근무(연장, 야간, 휴일)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근무요일은 사업장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 규정을 준수합니다.
- 체험형 인턴 종료 후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.
- 체험형 인턴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수료증을 발행하며 불성실 근무자(무단결근, 근무태만 등)에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

4.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

가. 전형절차 및 일정

채용공고	원서접수	면접대상자 발표	면접시험	합격예정자 발표	등록기간
9. 2.(목) ~ 9. 9.(목)	9. 2.(목) ~ 9. 9.(목)	9. 10. (금)	9. 13. (월)	9. 15. (수)	9. 23.(목) ~ 9. 24.(금)
공단 홈페이지, 잡플러스 등	전자메일	개별통보	장소 추후통보	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	개별통보

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채용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나. 원서접수방법

- 우리 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**접수마감일 2021. 9. 9.(목) 18:00 까지 전자메일(vosd12@dgsisul.or.kr)**로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자의 착오,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, 경력사항,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초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 또한, 지원서 기재 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다. 서류심사 합격여부

-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.
-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라. 면접시험 방법

- 면접시험은 **블라인드** 방식으로 실시합니다.
 - ※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평정요소
 -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
 - 전문지식의 습득정도와 그 응용능력

- 의사표현의 정확성, 논리성 및 판단능력
- 예의, 품행 및 성실성
-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○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○ 면접장소 및 시간 : 별도안내

※ 안내된 시간까지 면접장에 도착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마. 면접시험 합격 기준

- 면접 시 위원 3명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채점표에 기록한 개인의 총 점수를 평균하여 **고득점자 순**으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합니다.
-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**아래의 순서대로 평정요소별 점수가 높은** 응시자부터 합격예정자를 결정합니다.

1.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
2. 전문지식의 습득정도와 그 응용능력
3. 의사표현의 정확성, 논리성 및 판단능력
4. 예의, 품행 및 성실성
5.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바. **합격예정자 발표 : 2021. 9. 15.(수) 예정**

사. **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:** 주민등록초본(군 경력 포함),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사항, 경력사항, 채용 신체검사서(공무원 기준),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1매 (4×6 사이즈)

※ 제출 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
5. 예비합격자 선발기준

가.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존 합격자가 퇴사 하는 등 합격예정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 선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나.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예정인원의 3배수, 2명이상일 경우 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면접시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.

6. 기타사항

- 가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- 나.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,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다. 합격예정자 등록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, 근무 시작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라.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금융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.
- 마.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합격 무효처리 및 고용계약 해지,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.

-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·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
- 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
- 바.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사. 접수 미확인, 착오 및 누락,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아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시험장 출입 및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
- 현재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치료·격리중인 자
- 마스크 미 착용자

- 자.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dgsisul.or.kr>) 및 대구시설공단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(053-603-1126)에게 문의바랍니다.

※ 응시원서(입사지원서)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HWP) 받으세요.